

[파주시 고시 제2019-14호]

2019년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

『파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』 제15조에 따라 2019년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로당(노인여가복지시설)을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9년 1월 일
파 주 시 청 (인)

1. 사 업 명 : 경로당 환경개선사업

2.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장소

가. 신청기간 : 2019. 1. 17. ~ 1. 28.

나.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시민복지팀

다.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, 우편접수는 2019. 1. 28. 소인까지 유효)

3. 신청자격

가. 관내 ‘노인여가복지시설(경로당)’으로 등록되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

나. 가의 시설중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시설

4. 사업추진기간 : 2019년 3월 ~ 4월

○ 보조금 교부 전 집행사업은 전액 자부담 원칙 (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)

5. 보조금 지원규모 : 파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

6. 총 사업비 : 300,000천원

7. 제출서류

○ 2019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

- 첨부서류 : 지원신청서, 단체 소개서, 2018년 사업 추진실적, 사업계획서, 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,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.

8. 심의 및 통보

- 파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
- 심의결과는 단체별 소관부서에서 개별통보

9.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

- 지방보조금 지원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교부 결정 후 보조금 지원
-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 교부 통장과 연계된 단체명의로 전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집행에 사용
-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실적보고서(정산서) 제출 및 정산검사

10. 기 타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등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(일부)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 할 수 있음.
- 기타 사항은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(☎ 031-940-4407)로 문의 바랍니다.